

1. 개정이유

2022.11.15.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"소방장비의 표준규격(이하 "표준규격"이라 한다)"이 "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(이하 "기본규격"이라 한다)"으로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"표준규격"이 각각 "기본규격"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"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" 제명을 "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"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
일부개정고시안

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"를 "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"로 한다.

제1조 중 "표준규격"을 "기본규격"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"(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)"를 "(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"표준규격"을 각각 "기본규격"으로 한다.

제3조 중 "2019년 7월 1일"을 "2023년 7월 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</u> <u>소방장비의 종류고시</u>	<u>기본규격을 정해야 하는</u> <u>소방장비의 종류고시</u>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소방장 비관리법」 제10조제2항에 따 른 <u>표준규격</u> 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를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 <u>기본규격</u> ----- ----- -----.
제2조(<u>표준규격 소방장비의 종류</u>) ① 「소방장비관리법」 제10조 제2항에 따라 <u>표준규격</u> 을 정하 여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는 「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」 별 표 1의 장비 중 다음 각 호의 장 비와 같다. 1. ~ 5. (생 략)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 소방장비 관리에 대하여 <u>표 준규격</u> 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정 할 수 있다.	제2조(<u>기본규격 소방장비의 종류</u>) ① ----- ----- <u>기본규격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기 본규격</u> ----- -----.
제3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	제3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

시에 대하여 <u>2019년 7월 1일</u> 기	----- <u>2023년 7월 1일</u> ----
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	-----
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	-----
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	-----
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-----.